

결식우려아동 식사지원 공모사업 [희망도시락] 공고문



가. 모집개요

- 1) 사업명 : 결식우려아동 식사지원 공모사업 [희망도시락]
- 2) 사업기간 : 2023년 10월 2일(월) ~ 2023년 12월 29일(금)
- 3) 지원예산 : 기관당 최대 25,000,000원
- 4) 지원목적
 - 아동 건강 및 복지 향상: 결식우려아동들에게 균형 잡힌 식사를 제공함으로써 그들의 건강상태를 향상시키고, 영양상태를 개선하고자함. 또한, 식사 제공을 통해 아동들이 학업에 집중하고, 개인적인 성장과 발달을 이룰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.
 - 사회적 공평성 실현: 모든 아동이 식사를 가질 권리가 있다는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, 식사를 할 수 없는 아동이 부당하게 불이익을 받는 것을 방지함. 이를 통해 취약계층 아동의 교육과 개인적인 발달의 기회를 보장하고, 사회적 격차를 줄이는 데 기여함.
- 5) 지원대상
 - 기관에서 사례관리를 진행 중이며, 장애부모가정, 조부모가정, 한부모가정, 다문화가정 등 식사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가정 내 아동
- 6) 주요사업내용

구분	내용
식사 지원	- 사업수행기관에서 가정 당 주 3회 이상 가정으로 배달 또는 지원(총 7식) 1) 도시락 2회 이상: 건강식 위주의 식사로 구성(회차별 3식 가능한 분량) 2) 밀키트 1회 : 쉽게 조리할 수 있는 식사로 구성(회차별 1식) ※ 식단은 기관 영양사 및 외부의 검증된 식단표를 통해 구성 ※ 사업수행기관에서 외주업체를 통하여 지원하는 방식 가능 단, 외주업체를 통하여 진행할 경우, 배달 결과 등 관리계획 필요
식습관 개선 프로그램	- 사업수행기관에서 지원 아동 대상 프로그램 진행(최소 3회 이상)
사례관리	- 사례관리자 월 1회 이상 가정방문 또는 상담 필수 - 식사 지원 이외에 사업수행기관 차원의 사례관리 진행 필수

6) 예산 수립 시 유의사항

구분	산출내역	지원금액
식사 지원	- 1식 기준, 기관 상황에 따라 최소 8,000원으로 책정하되 최대 10,000원으로 책정 가능	최소 2,200만원
식습관 개선 프로그램	- 강사비, 교구비 등 세부 산출 근거 제시 必 - 프로그램을 목적으로 기관 내 환경개선 예산 사용 불가	최대 200만원
운영비	- 지원 가정에 대한 사례관리 또는 사업 수행을 위한 기관 운영에 필요한 예산으로 사용 가능 - 단순 사무용품 구매, 일반운영관리비 등 불필요한 예산 사용 불가	최대 100만원

나. 신청기간 및 접수방법

- 1) 신청기간 : 2023년 8월 1일(화) ~ 2023년 8월 25일(금) 18:00 마감
- 2) 신청대상 : 아동 식사 지원 및 식습관 개선 프로그램 진행이 가능한 국내 사회복지기관
- 3) 제출방법 : 제출서류를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제출 후, 구글독스에 단체정보 필수 기입
단체정보 기입(구글독스) <https://forms.gle/rJ2fxnJTJGSNXpNV7>
- 4) 제출처(택 1)
 - 이메일 : hopeful@hopebridge.or.kr (도착시간 기준 18:01부터 미접수)
 - 우편 : (04088) 서울시 마포구 신수로 52, 희망브리지 구호사업팀 앞
소인까지 인정되며, 우체국 택배/등기만 인정
- 5) 제출서류

		우편 접수	이메일 접수
제출서류	공문(신청 단체)	1부	※ 모든 서류(각 1부)를 하나의 PDF 파일로 제출
	신청서 및 사업계획서(협회 양식)	1부	
	고유번호증(사업자등록증 등)	1부	
	기관설립허가증(시설신고증 등)	1부	
	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 동의서(담당자)	1부	
	대상자 지원신청서(기관 대표사례 3건)	3부	
	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 동의서(가정)	3부	

- 6) 양식 다운로드 : 희망브리지 홈페이지(공지사항) <https://www.hopebridge.or.kr/>
- 7) 문의 : 희망브리지 구호사업팀 김상현 매니저(T.070-5148-9107)

다. 지원신청 및 지원원칙

- 1) 희망브리지로부터 지원을 받고자 하는 단체(기관)장은 공고된 기일 내에 제출처에 본 협회가 정한 신청서류를 제출하여야 함. 1개 단체에서 1개의 사업만 신청할 수 있음.
- 2) 지원신청 시 각 단체가 지원한 사업별로 스스로 정한 자부담원칙을 준수하여야 함.
- 3) 심사 후 사업계획과 예산을 일부 조정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, 이에 따라 조정된 사업계획과 예산을 반영한 수정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본 법인의 승인을 받아야 함.
- 4) 사업의 시행은 반드시 승인된 사업 계획서에 준해 실시되어야 함.
- 5) 사업의 성격에 따른 담당 인력 인건비 및 일반운영관리비 편성 불가함.
- 6) 사업수행지침 및 배분 계약서 등에 따라 진행되어야 하며, 불 이행시 지원취소 또는 환수.

라. 심사과정 및 일정(※변동 가능)

결과발표	사업 및 예산 조정기간	지원금 배분	지원금 전달식 및 담당자 간담회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23.09.08.(금) • 개별 통보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23.09.11.(월) ~ 23.09.15.(금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23.09.22.(금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23.10.05.(목)

* 심사과정 중 필요시 실무자 전화 인터뷰 및 추가 서류 요청할 수 있음

마. 심사기준

분류	상세 기준
지향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신청 단체의 주요 가치 - 사업 내용과 협회 가치의 부합성 - 차별 없는 참여자 선정기준 - 참여자 중심의 계획과 의사결정 구조 여부
적합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사업에 대한 지원 필요성 - 사업의 필요성, 기대효과 - 희망브리지의 지원 적절성
수행역량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신청 단체와 담당자의 역량 - 변화 달성을 위한 주요 활동 및 세부 계획의 일관성 - 자원 활용 계획 및 협력/연대 계획 - 위험요소에 대한 대응 계획 및 실현가능성
투명성 및 책임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예산의 구체성과 적절성 - 예산집행/사업운영/회계처리 등 사업의 투명성 - 사업에 대한 책무성
정성평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이 외의 요소까지 모두 고려한 종합적 검토

바. 지원제외대상

- 1) 동일한 사업으로 국가·지방자치단체 또는 다른 지원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았거나 받기로 확정된 사업
- 2) 법령상 금지된 행위에 사용되는 비용
- 3) 정치·종교적 목적에 이용될 수 있는 경우
- 4) 영리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
- 5) 「공직선거법」에 위반되는 경우
- 6) 그 밖에 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 배분대상에서 제외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또는 비용

사. 지원취소 또는 환수

- 1) 지원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비용임이 발견될 경우
- 2) 지원금을 신청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
- 3) 배분대상 사업이 중지되거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
- 4) 협회의 정당한 서류제출 요구 및 조사에 불응한 경우
- 5) 배분결정이 협회의 정관 또는 사업수행지침에 위반된 것임이 발견된 경우
- 6) 배분을 받은 자가 당해 배분과 관련하여 제출하거나 보고한 내용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
- 7) 그 밖에 심사위원회가 배분취소 및 환수를 하여야 할 사유가 있다고 판정한 경우

아. 기타사항

- 1) 지원사업 수행단체는 사업결과보고서(별도 양식)를 제출해야 함.
- 2) 배분을 받은 수행단체는 본 협회가 배분한 것임을 알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표기해야 함.
 - (1) 배분사업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홍보물(현수막, 전단지 등)
 - (2) 배분사업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보고서 및 자료
 - (3) 배분사업 수행과정에서 구입되는 모든 집기 및 비품